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11. 20 선고 2015가합71993 판결 [가압류등기말소절차 이행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피 고 M

변론 종결 2015. 10. 23.

판결 선고 2015. 11. 20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고양등기소 2009. 12.24. 접수 제1899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N, O, P은 소외 Q종중회의 임원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 등과 위 종중간의 2009. 12. 20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고양등기소 2009. 12. 24. 접수 제189924호로 채권최고액 2,093,000,000원, 채무자 Q종중회, 근저당권자 N, O, P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등기'라한다)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위 O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12. 2. 6. 이 법원 2011카단51310호로 청구금액을 400,000,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2. 3. 2. 위 O의 지분에 관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원고들은 N, O, P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(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517호)를 제기하여 2014. 11. 21. 위 법원으로부터 '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N, O, P과 Q종중회 사이에 2009. 12. 2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N, O, P은 Q종중회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'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받고, 2014. 12. 12.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이하 같다)의 각

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허무의 등기로서 무효이므로,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인 O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피고의 등기 또한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.

3. 판단

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(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다9011 판결 참조).

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N, O, P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원인인 O 등과 Q중중회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O 등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,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는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양섭, 판사 박창희, 판사 김영일

목 록

1. 고양시 일산동구 R 묘지 4,317㎡
2. S 임야 1,097㎡
3. T 임야 2,210㎡. 끝.